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등기,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출연금의 지급, 학생정원, 학비 등의 지원·중단,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등기(안 제2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 또는 임원 선임 승인을 모두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평의원회의 평의원 중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함.

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연도의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하는 데 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결산 보고(안 제16조제1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학생정원 및 입학전형(안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생정원을 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수요 전망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고, 의사 양성 규모에 관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은 입학전형의 과목별 배점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이나 그 변경 사항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

바. 학비 등의 지원 내용 및 지원 중단 사유(안 제23조 및 제24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실습비, 주거비 또는 기숙사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이 휴학하거나 유급되거나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학비 등의 지원 중단 사유로 규정함.

사. 학비 등의 반환 청구(안 제25조)

1)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등으로 학비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한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학비 등의 반환 청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안 제26조제1항)

의무복무기간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처음 배치받은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7. 2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선임을 모두 승인받은 날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7. 자산 총액

제3조(이전등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 또는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

2.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날

3. 임원 선임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모두 받은 날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정관 인가서 사본

다. 임원 선임 승인서 사본

라. 자산 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장 조직 등

제6조(임원 선임의 승인 취소사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그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한 경우

제7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평의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의원회”라 한다)의 평의원(이하 이 조에서 “평의원”이라 한다) 중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에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재무회계 등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제9조(출연금 예산의 결정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

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9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연금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제11조(출연금 규정의 준용)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2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대상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물품의 관리청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차입 금액,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 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4조(국가의 재정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의사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이하 “공공보건의료”라 한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하는 데 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지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해야 한다.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예산 결정 통보와 지급·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연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본다.

제15조(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사업 목표, 사업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결산 보고 등)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제4장 학사 등

제17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1. 재직 교원의 계열별 목표 성별 비율
2. 신규 임용 교원의 계열별 목표 성별 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조치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의 제출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정원) ① 총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이하 이 조에서 “학생정원”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수요 전망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고, 의사 양성 규모에 관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정원을 학칙으로 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정원의 결정 절차 및 승인·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입학자격)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입학방법) ① 법 제27조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입학전형시행계획) ① 총장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수립·공표된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학사 운영 보고) ① 총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학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함께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3조(학비 등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하며, 입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
2. 교재비 및 실습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비 또는 기숙사비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학비등의 지원 금액 산정방법과 지급 시기·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휴학하는 경우

2. 유급되는 경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학비등의 반환)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질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반환의무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 반환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등록된 경우

3. 질병 등 반환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총장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감면금액} = \text{반환금} \times \frac{\text{의무복무한 개월 수}}{180}$$

③ 총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반환금의 납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④ 총장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무복무기간의 산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

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의사가 같은 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과태료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공표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200	200
나.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	100	300	500
다.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500	5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연 락 처	(044) 202 - 1965